

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. 08. 28 개정 2017. 12. 26
 개정 2019. 08. 2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학과(부) 간 연계·융합전공의 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·목표) ① 융합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학과(부)가 연계·융합하여 개설된 전공으로 융합전공은 <별표1>과 같다.(개정 2019. 8. 26)

② 융합전공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공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,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3조(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) ① 융합전공은 희망 학과(부) 회의를 거쳐 개설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면 융합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신설여부를 결정한다.
 (개정 2017. 12. 26)

② 융합전공 신청 학생이 제5조제2항의 최소 선발인원에 2년 연속 미달될 경우 해당 융합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.

③ 융합전공과정에 참여하는 학과의 변경은 융합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.(개정 2019. 8. 26)

제4조(융합전공 이수신청 자격)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학년을 수료하여야 한다.

제5조(선발기준 및 인원) ① 융합전공 학생 선발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, 동점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 순으로 선발한다.(개정 2019. 8. 26)

② 융합전공 선발인원은 최소 20명으로 하며,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융합전공이 설치·운영되는 경우 최소 인원예외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9. 8. 26)

제6조(신청 및 절차)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(부)장의 확인을 받은 융합전공이수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교무처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(개정 2017. 12. 26, 개정 2019. 8. 26)

②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 학생을 선발하고, 선발된 융합전공 학생을 즉시 융합전공 주관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과편성 및 이수) ① 융합전공의 교과과정 편성은 교과과정 편성규정 제8조에 따르며, 융합전공에 편성되는 교과목은 융합전공 관련 학과(부)에 이미 개설된 교과목으로 구성하되, 필요 시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만을 위한 신설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.

- ② 융합전공의 전공교과 이수는 소속 학과(부)의 전공 교과과정과 관계없이 융합전공 개설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융합전공 참여 전공 교과과정 중에서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대체 인정학점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소속 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해당 이수구분으로 인정하며, 소속 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⑤ 융합전공 이수학생은 융합전공 졸업시험(또는 졸업작품) 등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.

제8조(융합전공의 운영) ① 융합전공에 주관학과 및 주관교수를 둔다.

- ② 융합전공의 주관교수는 주관학과의 학과(부)장이 겸직할 수 있다.

제9조(학위수여) 융합전공 이수학생이 융합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학칙 제34조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0조(중도포기)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융합전공이수포기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융합전공 주관교수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 12. 26)

제11조(융합전공운영위원회) ①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합전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2.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융합전공의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
 - 4. 융합전공의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 - 5. 융합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,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융합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융합전공 신설심의에 대한 경과조치) 제3조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위원회가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융합전공의 신설을 심의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융합전공운영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융합전공과정

전공명칭	이수 정원	학위종별	비고
빅데이터분석융합전공	00	통계학사	2018학년도 개설
태권도산업융합전공	00	경영학사	
국방행정융합전공	00	군사학사	
공공인재융합전공 [트랙] 건강생명 공공인재 트랙 [트랙] 자원개발 공공인재 트랙 [트랙] 관광문화 공공인재 트랙 [트랙] 공공서비스 공공인재 트랙	40	공공인재융합전공학사	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의한 설치
공공건강보험융합전공 [트랙] 건강보험심사 트랙 [트랙] 국민건강보험 트랙	20	공공건강보험융합전공학사	
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 [트랙] 디지털헬스케어 트랙	40	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학사	

